

인문학 강좌 교과 운영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시행 지침은 인문학 강좌의 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인문학 강좌는 우리대학의 교양필수로 운영되는 교과목으로 지성, 영성, 덕성이 조화된 전인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다.

제3조 (적용대상)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201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으로 한다.

제4조 (이수방법 및 수강신청) ① 모든 재학생은 인문학강좌의 개설시 의무적으로 참석하되 4학년 2학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2011학년도 신입학생부터는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매학기 본인 학과의 교양필수로 개설된 강좌에 의무적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 단,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는 공통학과에 개설된 교양선택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할수 있다.

③ 출결 확인은 교역처의 경건훈련카드 제출 결과를 활용할수 있으나 경건훈련카드 외에 별도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④ 경건훈련과는 별도로 수강하는 경우, 교과목 대체이수를 위하여 인문학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강좌 출석 확인을 내용요약 및 소감문 제출로 대신한다.

제5조 (교과목 개설 및 담당교수 배정) ① 인문학강좌는 매학기 개설하며 2011학년부터는 교양필수로 하며, 이전 입학생은 공통학과의 교양선택으로 개설한다.

② 교양필수는 각 학과별 학과장이 교양선택은 교양학부장에게 배정한다. 보직등의 사유로 배정하지 못할시에는 교무처장에게 지정하여 교과목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 (수업조교 배정) ① 전교생에게 해당되는 교양필수 교과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학기 적절한 수준의 수업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.

② 수업조교는 수강생의 출결 확인 및 내용요약 및 소감문을 인문학 강좌가 종료된 후 1주일안에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다.

제7조 (학점인정) ① 매학기 개설된 모든 강좌중 2번의(2부대 1번) 결석까지 0학점 PASS를 부여한다.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"F"로 처리하며 취득한 "F"성적은 학사경고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장학금 지급지침에 근거한 장학금 지급에는 포함된다. <개정 2011. 11. 23.>

② 내용요약 및 소감문은 각 주제에 대하여 해당 강좌 종료 후 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인문학강좌의 출석과 학점인정의 근거로 활용한다. <개정 2011. 11. 23.>

③ 내용요약 및 소감문 제출 확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이의 신청은 공고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.

④ 최종 성적 평가는 담임교수가 성적보고서 입력으로 종료되며 성적이의신청이 있

을 경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.

⑤ 졸업예정자가 1회 미이수로 인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지정과제 제출 및 인문학강좌실행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이수인정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3.11.13.>

제8조 (시상) ① 내용요약 및 소감문 우수자 시상은 모든 강좌의 소감문을 모두 제출해야만 심사대상이 된다.

② 인문학강좌를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모든 강좌의 소감문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시상 심사대상이 된다.

[본조신설 2011. 11. 23.]

제9조 (학칙적용) 이 운영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 이 지침의 제정 및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 이 지침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운영지침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운영지침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